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

2015년 10월 8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0/08 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33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하는 회사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)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“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”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정 관)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사업 범위 및 그 내용과 집행
7. 예산과 회계
8. 정관의 변경
9. 해산에 관한 사항
10. 공고의 방법
11.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

제5조(자본금)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)를 할

수 있다.

제6조(사업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중·대형 건물 청소관리
2. 구 시행 공공 업무 대행
3.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

제7조(주주권 행사)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행사한다.

제8조(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) 대표이사 및 임원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제9조(운영심의위원회) 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「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운영심의위원회」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동작구 부구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동작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(구의원은 제외) 2명
2. 동작구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장
3.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) ① 구청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1조(대행사업의 시행) 회사는 국가·시·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.

제12조(사업연도) 회사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13조(경영실적의 평가) 대표이사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
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3. 전년도 결산서
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5.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6.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

제14조(경영진단의 실시) ① 구청장은 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

2.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이사는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·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

2. 사업 규모의 축소,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

3.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제15조(재정 지원) ① 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제16조(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)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복지, 지역경제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, 사용용도, 사용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.

제17조(해산 요청 등)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4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

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설립 목적의 달성, 존립기간의 만료,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

3.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8조(지도・감독)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

제19조(다른 법령의 준용)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상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회사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□ 제정이유

일자리에 기반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을 위하여 구청이 직접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고, 지역내 다양한 자원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지협력모델을 개발하여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(제2조)

나. 정관 기재사항 (제4조)

다. 출자의 근거 (제5조)

라. 회사의 사업 (제6조)

마.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(제8조)

바.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(제13조, 14조)

사. 재정 지원 (제15조)

아. 해산 요청 등 (제17조)